

증권 대차거래 약관 (전문투자자 차입자용)

제정일: 2021.08.30

시행일: 2021.08.30

제 1 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증권의 대차거래 (이하 "대차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증권의 차입을 신청한 자와의 대차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차거래"라 함은 회사의 증권대차거래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차입자가 회사로부터 증권을 차입하는 "차입거래"와 대여자가 보유중인 증권을 회사에 대여하는 "대여거래"를 말한다. 이 약관에서는 차입자가 회사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차입신청"이란 차입자가 회사에게 증권을 차입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3. "차입가능풀"이란 차입자가 차입 가능한 대상증권의 총집합(POOL)을 의미한다.
4. "차입공매도"란 차입자가 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차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5. "반환, 인도 또는 지급"의 대상은 증권의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수량을 말하며, 현금의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6. "담보"란 회사가 차입자에게 대차거래를 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이나 현금 등을 말한다.

7. "영업일"이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 개장되는 날을 말한다.

제 3 조 (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평가방법) ① 대차거래의 대상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차입자와 합의에 의하여 대차거래대상 증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차거래대상 증권의 평가방법은 제9조(담보대상 및 평가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 (대차거래서비스의 신청) ① 대차거래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위탁 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설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 차입약정은 당사에 대여약정이 신청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회사의 영업시간 동안 영업점 내점, 유선 등을 통하여 차입약정을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차입약정이 가능한 계좌를 한정할 수 있다

⑤ 차입약정된 계좌는 차입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제 5 조 (개별대차거래계약의 성립) ① 회사의 차입가능풀 및 고객이 차입신청 시 정한 대차거래 조건이 일치하여 체결된 경우 개별대차거래계약은 성립된다.

② 대차거래계약은 체결이 발생한 건 별로 “개별대차거래계약”이 성립되고 관리된다.

③ 개별대차거래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차입자에게 해당 건의 체결내역을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와 차입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대차거래의 정지)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사유로 차입거래의 진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차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의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정지를 통보받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차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정지한 후 그 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업무를 재개한 후 이러한 사실을 차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대차증권 등의 인도) ① 대차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차입자는 회사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회사는 차입자에게 대차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대차 증권의 인도 및 담보제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대차증권 :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고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

2. 담보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식의 질권 설정

3. 현금(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외국 통화를 포함한다) 담보 : 한국은행·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 등을 통한 자금 이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차입자의 합의에 의하여 대차 증권의 인도 또는 담보제공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8 조 (대차증권 등의 반환) ① 대차거래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차입자는 회사에게 대차증권, 대차수수료 및 지급되지 아니한 대차증권에 대한 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차입자에게 담보, 현금담보운용료(담보로 받은 현금을 이용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급되지 아니한 담보증권에 대한 수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권리발생, 회사에 대한 상환요청 및 제11조(수익의 처리)등의 사유로 차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종료일 이전에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5영업일 전(또는 회사와 차입자가 별도로 정하는 날)에 차입자에게 거래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차거래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에 따른다.

③ 차입자가 거래종료일 이전에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거래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대차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대차증권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제 9 조 (담보대상 및 평가 방법) ① 대차거래의 담보대상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사와 차입자의 합의에 의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상장주권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종목의 기준가
2. 현금 : 액면금액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차입자의 합의에 의하여 담보대상 및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10 조 (담보의 유지 등) ① 회사와 차입자는 담보의 평가금액을 대차증권의 평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이 대차증권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회사와 차입자와의 사전에 합의한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일정산을 하여야 한다.

② 차입자는 차입거래에 의하여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낮은 경우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담보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입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차입자는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대차거래시 차입자는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비율 및 담보

유지비용은 회사와 차입자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차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차입자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차입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화내용 녹취 또는 차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수익의 처리) ① 차입자는 대차기간동안 대차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등의 수익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와 차입자가 합의한 경우 그 지급 방법 및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현금배당, 이자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이자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대차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에 회사에게 지급한다.

2. 주식배당 및 무상주 : 대차증권에 대한 주식배당, 무상증자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된 신주는 (이하"배당주식등"이라 한다)는 그 배당주식등의 상장일에 해당 대차거래와 동일한 조건의 대차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신주인수권/권리락 : 대차증권의 유상증자로 발생된 신주인수권/권리락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고객이 회사에 신주인수권을 반환(출고) 하거나 또는 기준일 익명업일 다음과 같이 계산된 현금으로 회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유상증자에 관한 청약은 불가하다.

(권리락일 전일종가-권리락일 기준가격)*차입수량

② 회사는 차입자가 제1항에 따라 대차증권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 등의 수익을 회사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익의 반환기간까지 차입자가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외의 수익의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 (권리의 행사) 대차증권에서 발생하는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등의 권리는 증권을 반환 받지 않은 한 회사(또는 차입자)가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의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 13 조 (대차수수료의 지급 등) ① 차입자는 거래 시작일로부터 거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대차거래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대차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는 담보제공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현금담보운용료를 차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대차수수료는 대차거래기간의 다음 월 첫 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직전 지급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의 기간 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와 차입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차감정산) 회사와 차입자간에 지급 또는 인도하여야 할 대차증권, 현금담보, 담보증권, 대차수수료, 현금담보운용료, 대차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및 담보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은 현금 또는 동일종목의 경우 이를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차감정산의 세부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계약불이행사유 등) ① 차입자가 제2항(이하 "채무불이행사유"라 한다) 또는 제3항(이하 "파산 등의 사유"라 한다)의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채무불이행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8조(대차증권 등의 반환)에 의하여 대차거래의 종료 시 인도시한까지 대차증권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2. 제10조(담보의 유지 등)에 의하여 회사에 담보의 추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11조(수익의 처리)에 의하여 대차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금, 신주인수권 등 대차증권으로 부터 발생한 수익을 회사에 인도하지 않은 경우
4. 제13조(대차수수료의 지급 등)에 의하여 회사에 대차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차입자가 회사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이행 의무를 거절한 경우
6. 그 밖에 회사와 차입자와 사전에 계약불이행사유로 합의한 경우

③ 파산 등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 된 경우
 2.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반환기 일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3. 회사가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④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 16 조 (대차거래의 조기 종료 및 정산 등) ① 대차거래의 조기 종료 사유 및 거래 종료일은 각 호와 같다.

1. 차입자가 제15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차입자에게 거래의 조기종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차입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이하 "조기도래통지"라 한다)하고 합의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차거래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2. 회사는 차입자가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래가 종료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 계약불이행사유(제15조 제2항 제1호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차입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가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조기도래통지 시 조기종료일 이전에 채무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할 것을 차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차입자는 해당 기한 내에 채무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자가 해당 기한 내에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기도래통지서에서 지정한 날에 대차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대차증권의 반환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차입자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대차거래가 종료된 경우 또는 회사와 차입자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차감정산을 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5조(계약불이행사유 등)의 사유가 있는 차입자가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차거래에 대하여 거래종료일을 기준으로 각 목을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차증권 및 담보증권의 평가는 제9조(담보대상 및 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대차거래에 대하여 회사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담보 등에 대한 평가금액의 합계

나. 각 대차거래에 대하여 차입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대차증권 등에 대한 평가금액의 합계

3. 회사는 제2호에 의하여 차감정산을 한 경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거래종료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정산내역을 차입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 개의 개별대차거래가 있는 경우 그 중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거래만 채무불이행된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전체 거래가 모두 종료되지는 않는다.

2. 회사는 대차거래의 종료시 인도시한까지 대차증권을 반환하여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게 할 것을 차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차입자가 해당 기한 내에 대여증권을 인도한 경우 채무불이행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자가 해당 기한 내에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결 하지 못한 때에는 제 4항에 따라 차입자는 연체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연체 이자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는 차입자의 대차거래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담보로 받은 차입자의 현금이나 증권 등을 처분하여 손해를 배상하는데 사용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결과로 산정된 차액의 반환시기는 거래종료일로 하며, 해당 차액의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차입자는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7 조 (통보의 방법 등) ① 회사는 대차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대차거래체결일 당일에 해당 내역(종목, 수량, 대차수수료 등)을 차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통보 및 의사전달은 전화,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등 기타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보, SMS 등 차입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차입자에게 통지한다.

제 18 조 (약관 등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에 차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 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차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차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차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차입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주소변경 등의 통지) 차입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차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 (관계법규 등 준수) 차입자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 (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22 조 (분쟁조정) 차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3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차입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4 조 (관계법규 등 준용)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첨>

1. 제 10 조 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은 다음과 같다.

▶ 차입공매도 추가담보제공기간 : 요구일 포함 2 일(T+1 일 까지)

* T : 요구일(추가담보제공 요구일), 16:00 경 기산

이 약관은 2021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